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07. 10. 10	조례 제1554호
개정	2008. 6. 16	조례 제1588호(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2010. 11. 25	조례 제1731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1. 8. 9	조례 제1786호(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4. 8. 22	조례 제2009호(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5. 11. 5	조례 제2131호(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광명시 경로 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6. 9. 26	조례 제2195호(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7. 6. 20	조례 제2265호(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재단법인 광명시 자원봉사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 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8. 7. 31	조례 제2372호(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9. 6. 25	조례 제2492호(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2020. 3. 25	조례 제2584호(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서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 복지사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16, 2014. 8. 22, 2020. 3.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8. 22>

1. “장애인 종합복지관”이란 장애인에 대한 상담·사회심리·교육·직업 및 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장애인 체육관”이란 장애인의 체력증진 또는 신체기능 회복 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란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이란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직

업훈련 및 일거리 등을 제공하여 보호적 조건에서 생산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 등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2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시장은 법 제58조 및 제59조제1항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한다. <개정 2014. 8. 22>

1. 광명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하 “종합복지관”이라 한다)
2. 광명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체육관(이하 “종합복지관체육관”이라 한다)
3. 광명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하 “주간보호시설”이라 한다)
4. 광명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이하 “재활자립작업장”이라 한다)
5. 광명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하 “직업재활시설”이라 한다)

제4조(이용대상)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 및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4. 8. 22>

제5조(이용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에게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6. 16, 2015. 11. 5, 2020. 3.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종합복지관 및 종합복지관체육관의 이용료는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최소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정한 이용료 징수 산정기준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7. 31>

③ 주간보호시설의 이용료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한 장애인 생활시설 실비입소 수납한도액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6, 2018. 7. 31>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이용료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의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수익금의 사용) ① 재활자립작업장의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익금을 고용인원의 급여 및 운영유지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광명시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3장 위탁관리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계약보증 등 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 선정)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격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5>

1. 법인의 목적사업 및 운영 능력 등 수탁에 필요한 인력, 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
2. 재정적 부담능력, 책임능력, 공신력
3. 사회복지 기여도
4. 위탁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등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광명시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한 위탁운영법인을 결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탁운영결정서를 수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위·수탁 협약)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과 법인은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자와 별표의 협약서에 따라 협약

을 체결한다. 다만, 시설의 성격에 따라 협약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협약에 따라 계속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③ 위·수탁 협약 시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서 규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6. 20>

제10조(직원 및 급여)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준 및 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 복지시설별 직제 및 임금지급기준에 따른다. 다만, 재활자립작업장 고용대상 장애인에 대하여는 수탁자와의 계약에 따르며, 급여는 적정 월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6>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5>

1. 수탁자는 수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설의 위탁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대여·담보설정·재위탁 등을 할 수 없다.
5. 수탁자는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반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
6. 수탁자는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 운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수탁자는 운영할 때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이 조례 및 협약에 의한 위탁자의 처분과 명령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위탁협약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

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해지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8. 22, 2020. 3. 25>

1. 수탁자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협약 또는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에 따른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설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
 5. 기타 공익 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② 위탁 협약이 해지 또는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광명시에 귀속된다.

제13조(원상복구) 수탁자는 위탁의 해지,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5>

② 수탁자는 위·수탁 협약 후 10일 이내에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을 가입한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위·수탁 협약기간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 사용 중 부분적으로 발생한 시설 및 비품의 망실·훼손 등으로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에는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장애인 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7. 31>

제17조(승인 및 보고) 수탁자는 다음 제1호에 관한 사항은 매 회계 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제2호 내지 제7호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5호 내지 제6호에 관한 사항은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5. 제5조제2항 및 제3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6. 이용료 및 실비징수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신·증축 및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등

제4장 장애인복지위원회

제1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 및 사업 시행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 등 사업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하여 광명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복지 시책의 기본계획 및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편익증진을 위한 시책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8. 22>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 3. 25>

1. 시설이용자(또는 장애인관련 단체 대표) 또는 시설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2.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3. 지역주민
4. 후원자 대표
5. 광명시의회 의원
6. 장애인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
7. 기타 시설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0. 11. 25>

제2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7. 31>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7. 31, 2020. 3. 25>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켰을 때

4.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6. 16, 2011. 8. 9, 2018. 7. 31, 2020. 3. 25>

제5장 종합복지관 운영

제24조(사업) 종합복지관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직업재활에 관한사항
4. 장애인의 사회생활 적응지도 및 사회교육과 계몽사업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복지시책과 기타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취학 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7. 기타 장애인의 능력고취 및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등

제6장 종합복지관체육관 운영

제25조(사업) 종합복지관체육관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의 체력증진 또는 신체기능회복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스포츠팀 육성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시설 개방 운영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통한 재활서비스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체육시책과 관련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의 체육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8. 장애인의 체육환경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9. 기타 장애인 체육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7장 주간보호시설 운영

제26조(사업) 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아동의 취학 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2.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일시보호에 따른 교육계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보호 장애인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제27조(입소자격) 주간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하의 등록 장애인으로서 보호시설의 장이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18세를 초과한 등록 장애인으로서 보호시설의 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입소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퇴소조건) 주간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퇴소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5>

1. 본인 또는 보호자가 퇴소를 원하는 사람
2.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전염성 질환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기타 보호시설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장 재활자립작업장 운영

제29조(업종) 재활자립작업장의 업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한다.

제30조(사업) 재활자립작업장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재활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직업적응훈련 및 직업훈련을 위한 생산 활동에 관한 사항
3. 재활자립교육 및 사후지도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사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일거리 제공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애인 재활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관한 사항 등

제31조(고용대상 장애인) ① 재활자립작업장 고용대상 장애인은 광명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등록 장애인으로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고용한다. 다만, 비장애인 채용은 전체 고용인원의 10분의 2 범위에서 생산 공정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수탁자가 판단하여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7. 31, 2020. 3.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고용은 수탁자가 재활자립작업장 운영에 따른 제 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결정한다.

제9장 직업재활시설 운영

제32조(기능) 직업재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6. 25>

1.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직업훈련 및 일거리 등을 제공하여 보호적 조건에서 생산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 등을 실시하는 시설
2. 장애인 노동작업시설 : 직업능력은 있으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산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최저 임금이상을 지급하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 등을 실시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훈련시설 :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직업평가·사회적응훈련 및 직업훈련 등을 일정기간 실시하여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 및 사후 지도 등을 실시하는 시설
4. 장애인 생산물판매시설 : 주기능으로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부기능으로 장애인 생산품에 관한 상담·홍보·판로개척 및 정보제공 등을 실시하는 시설

제33조(고용) ① 직업재활시설 고용대상 장애인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고용한다. 다만, 비장애인 채용은 전체고용인원의 10분의 2 범위에서 생산 공정상 필요에 따라 수탁자가 판단하여 채용한다. <개정 2018. 7.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고용은 수탁자가 작업장 운영에 따른 제 규정을 정하여 결정한다.

제10장 보칙

제3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관계법령, 「장애인복지시설운영규정」,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 9. 26>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2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명시 장애인 재활 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 체결된 위·수탁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협약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25 조례 제1731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4 까지 생략

⑦5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 중 “해당업무 담당주사가”를 “해당업무 팀장이”로 한다.

⑦6 부터 ⑦9 까지 생략

부칙 <2011. 8. 9 조례 제178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7 까지 생략

④8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④9 부터 ⑦1 까지 생략

부칙 <2014. 8. 22 조례 제2009호, 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5 조례 제2131호,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광명시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9. 26 조례 제2195호,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 20 조례 제2265호, 자치법규 일체정비에 따른 재단
법인 광명시 자원봉사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9. 6. 25 조례 제2492호,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3. 25 조례 제2584호,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8. 7. 31>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의 위탁에 관한 협약서

광명시(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법인(이하 “수탁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광명시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재활의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위탁사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업무의 종류

- 가. 장애인의 복지시책과 관련된 조사·연구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 나. 장애인의 자립진로 개척을 위한 정보교환 및 행사에 관한 사항
- 다. 장애인의 발생 예방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 라. 장애인의 재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 마. 장애의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 바.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 사. 장애아동의 취학 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 아. 장애인의 체위 향상에 관한사항
- 자.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다음 위탁재산(시설·장비·비품·부대시설 등)의 유지·관리

- 가. 시설명 및 위치 :

나. 부대시설 : 별도 기재

다. 주요장비 : 별도 기재

라. 가목 내지 다목 외에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작성하는 “인계·인수서”에서 정한 시설·장비·비품 등을 포함한다.

제4조(위탁기간) 이 협약에 의하여 “수탁자”는 광명시 ○○○○○을 관리·운영하는 기간은 이 협약 체결일부터 5년으로 하되, 연장(재 협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의 위탁사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재 협약이 적정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서 등)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광명시 ○○○○○의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위탁자”에게 제출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위탁사무에 관한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비 등)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고 위탁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② “위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절차·방법·정산 등에 관여하는 「지방재정법」·「광명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광명시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사용료 징수 등)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위탁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탁시설을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광명시 ○○○○○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협약체결 시, 위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과 시설소유자 및 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손실·피해 등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포함한 피해 당사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양여·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고, “위탁자”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신설·확장 또는 멸실할 수 없으며, 시설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였을 경우에도 준공과 동시에 이를 “위탁자”에게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운업을 이유로 위탁재산과 위탁기간 중 재산의 증가분에 대한 연고권·매수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자치법규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협약에 의한 “위탁자”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 광명시 ○○○○○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고(개정을 포함한다)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및 정원, 사용료 등 광명시 ○○○○○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수탁자”는 광명시 ○○○○○을 동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편람)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형사상 책임) ① 광명시 ○○○○○ 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다.

② “수탁자”또는 제3자가 위탁재산을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광명시 ○○○○○ 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재판상 청구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동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의 해지)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협약의 관계법령(「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위반하였을 때
3. “위탁자”가 공익 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위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탁자”와 “수탁자”가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일 3월 전에 해지의사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협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

제14조(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 ① 협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동으로 위탁재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 뒤 이상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각종 서류와 보조금의 집행내역서 및 집행 잔액 등을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광명시 물품관리 조례」 등의 해당조항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③ 이 협약과 관련한 법적분쟁의 관할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6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서의 효력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기간의 만료 또는 협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협약 체결 전에 사무협조에 의하여 이루어진 광명시 ○○○○○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협약서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주 소 :

성 명 :

수탁자 주 소 :

성 명 :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8. 7. 31>

장애인 복지시설 위탁운영(갱신) 신청서				
신 청 인	법 인 명			전 화 번 호
	소 재 지	광명시		
	대 표 자 성명			생 년 월 일
	설 립 일			회원수 또는 수 용 인 원
신 청 사 항	운 영 목 적			
	운영(갱신)기간	~		
	주요 사업내용			
법 인 현 황	자 산 현 황			
	직 원 현 황			
	사 업 실 적			
연 간 예 산 액 (백만원)	계	운영주체 부담금	보조금	기타
주요 사업계획				
<p>「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복지시설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0</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 (인)</p> <p>광 명 시 장 귀하</p>				
<p>※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p>				

[별지 제2호 서식]

장애인 복지시설 위탁운영 결정서				
법 인 명				
법인 소재지				
대 표 자	~			
설 립 일 자				
주요사업내용				
자 본 금				
기 타				
연 간 예 산 액 (백 만 원)	계	자 부 담	보 조 금	기 타
결 정 사 유				
특 기 사 항				
<p style="text-align: center;">「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복지시설 위탁운영자 결정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0</p> <p style="text-align: left;">광 명 시 장 귀하</p>				